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81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 송옥주・유동수・임종성

안호영 • 박용진 • 정춘숙

박 정ㆍ서삼석ㆍ박찬대

최혜영・이수진(비)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키즈카페란 주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내에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복합 공간을 의미함. 현재까지 키즈카페에 관하여 법률상 용어 정의나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소 중 일부 구역을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음식점 또는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구역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고 있음.

한편 현행 법령상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위락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소방안전관리 또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데 반하여,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는 현행법의

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구역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 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임.

이에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3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영업소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해당 영업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특정소방대상물"이란 소방	3
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	
대상물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</u>	대통령령으로 정
<u>하는 것</u> 을 말한다.	하는 것(「어린이놀이시설 안
	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
	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
	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
	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
	<u>소를 포함한다)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